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 (제36조의3제2항 관련)

1. 교육총괄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 나.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시스템 운용이 가능할 것
- 다.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와 협조가 가능하고 교육운영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갖출 것

2.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장 시설(30점), 교육지원 인력(20점), 교육실적(20점), 교육 실행 능력(3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관을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 기준		평가점수
시설 현황 (30)	교육장 시설 (30)	실습 교육장 보유 여부(10)	50명 이상 교육이 가능한 시설 (200㎡ 이상)의 보유(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여부	보유(10) 보유하지 않음(0)	
		이론 교육장 보유 여부(15)	30명 이상 교육이 가능한 책상, 의자 등을 갖춘 강의실(60㎡ 이 상)의 보유(임차한 경우를 포함 한다) 여부	보유(15) 보유하지 않음(0)	
		교육장 접근성(5)	주차시설 확보, 대중교통 접근성	우수(5) 보통(3)	
교육 역량 (70)	교육지원 인력 (20)	교육지원 인력 보유 수(20)	교육지원을 위한 전담인력(강사 인력은 제외) 보유 수	3명 이상(20) 2명(15) 1명(10)	
	교육실적 (20)	3년간 교육 횟수(10)	3년간 교육 실시 횟수	10회 이상(10) 5회 이상(8) 5회 미만(6) 없음(0)	
		3년간 교육 인원 (10)	3년간 교육 이수자 수	500명 이상(10) 300명 이상(5) 300명 미만(3) 없음(0)	
	교육실행 능력 (30)	교육계획의 타당성 (10)	교육계획서의 타당성	우수(10) 보통(5)	
		운영조직의 체계성(10)	운영조직의 체계가 교육이 가능 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우수(10) 보통(5)	
		강사 인력 보유 수(10)	과목별 강사 인력 보유 수	2명 이상(10) 1명 이상 보유(5) 1명 미만 보유(0)	